

체육시설(헬스장) 이용에 대한 안내 및 준수사항

1. 체육시설(헬스장) 이용

- 가. 이용자는 체육시설(헬스장) 이용에 적합한 복장과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 나. 이용시간은 15:00 ~ 21:00이며, 학기 중 평일만 이용가능(주말, 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불가) 이용자는 1일 1회만 입장이 가능하다.
- 다. 이용자는 운동기구 이용 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 라. 체육시설(헬스장) 내에서는 스포츠 음료, 물 등 개인 용기를 이용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한다.
- 마. 체육시설(헬스장) 회원 및 이용 정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총 회원 100명,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 바. 이용자는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한다.

2. 이용권한

- 가. 체육시설(헬스장) 이용 희망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및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선착순의 예비번호로 자격이 넘어간다.
- 나. 이용자는 체육시설(헬스장) 입장 시 학생증(또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용중지 및 환불

- 가. 체육시설(헬스장)의 이용은 본인신청, 본인사용이 원칙이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사용료 환불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 나. 단, 부상, 휴학 등 일신상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서식 1]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용권한 반납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다. 환불금액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환불신청일 까지 운영일 1일당 1,000원씩 삭감하여 지급한다.

4. 소지품의 보관

- 가. 이용자는 체육시설(헬스장) 이용과 동시에 개인 물품의 보관을 위해 사물함 열쇠를 관리자(학생처 근로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 종료와 동시에 반납해야 한다.
- 나. 모든 사물함이 이용 중이거나 고장으로 인해 사물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는 개인 소지품의 보관을 관리자(학생처 근로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분실 및 도난

- 가. 개인용품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6. 파손

- 가. 체육시설(헬스장)의 시설물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체육시설(헬스장) 이용료 환불 신청서

성명		스쿨(소속)	
학번(교번)		연락처	
이메일		신청일	

1. 환불사유

2. 환불금액

환불금액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 환불금액: 매달 1일부터 환불신청일 까지 운영일 1일당 1,000원씩 삭감하여 지급

이용료 환불에 대한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처장 귀하